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의안번호	제 호
의결년월일	

제출년월일 : 2011. 10. .

제 출 자 : 구 미 시 장

1. 제안이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시행령 제7조에 의한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심의대상 안건을 아래와 같이 상정함.

2. 주요내용

[안건1] 금오공대 구)캠퍼스 부지매입

1) 제안설명

금오공대 구)캠퍼스 모바일융합기술센터, 비즈니스지원센터, 3D클러스터 조성 등 신성장동력산업의 원활한 사업 추진으로 기업경쟁력 확보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코자 함.

2) 주요내용 【취득자산】 - 변경

- 토 지 : 35,019m²(신평동188-1번지 외 11필지)
- 건 물 : 34,356m²(본관외 3동)
- 기 타 : 공작물 16점, 수목380본
- 기준가격 : 41,031,581천원(감정가)

【구. 금오공대 캠퍼스 자산취득】 - 당초

- 토 지 : 89,398m²(신평동188번지의 외 15필지)
- 건 물 : 54,497m²(본관외 17동)
- 기 타 : 200점(공작물 161점, 입목죽 39종)
- 기준가격 : 약 67,016,673천원(假 감정)

[안건2] 미활용 시유재산 매각

1) 제안설명

양포파출소 건립 부지교환으로 발생한 미활용재산을 매각하여 신규 공유재산 취득 재원으로 활용하여 공유재산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코자 함

2) 주요내용 【처분재산】 - 구,원평파출소

- 토 지 : 180m²
- 건 물 : 134m²
- 기준가격 : 1,057,704천원(감정가)

3. 근거법령

- 「지방자치법」 제39조 및 동법시행령 제36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동법 시행령 제7조
- 「구미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5조, 제12조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회계명 : 일반회계

(단위 : m², 천원)

[illegible]

2011년도 취득대상 재산목록

회계명 : 일반회계

(단위 : m²,천)

구분	재 산 의 표 시			추정 가액	취득 시기	취득 사유	취득재산 소유자 주소·성명	비 고
	지목	소 재 지	수 량					
취득	합 계			41,031,581				
	소 계	12필지	35,019	20,189,752				
	토지	신평동 168-41	222	83,694	2011년	매입	기획재정부	감정가
		신평동 178-1	91	34,307				
		신평동 178-3	1,457	549,289				
		신평동 188-1	26,093	16,386,404				
		신평동 199	3,782	1,425,814				
		신평동 201	83	31,291				
		신평동 202-1	265	99,905				
		신평동 205	895	337,415				
		신평동 205	445	279,460				
		신평동 473-25	172	64,844				
		신평동 479-3	75	28,275				
		신평동 479-4	138	52,026				
		신평동 산21-2	1,301	817,028				
	소 계		34,356	20,802,829				
	건물	신평동 188-1	16,566	4,174,632				
		신평동 188-1	7,011	6,800,980				
		신평동 188-1	792	139,361				
		신평동 188-1	9,987	9,687,855				
	소 계		396	39,000				
	입목	신평동 188-1외	16점	27,000				
		신평동 188-1외	380본	12,000				

2011년도 매각대상 재산목록

회계명 : 일반회계

(단위 : m², 원)

[illegibl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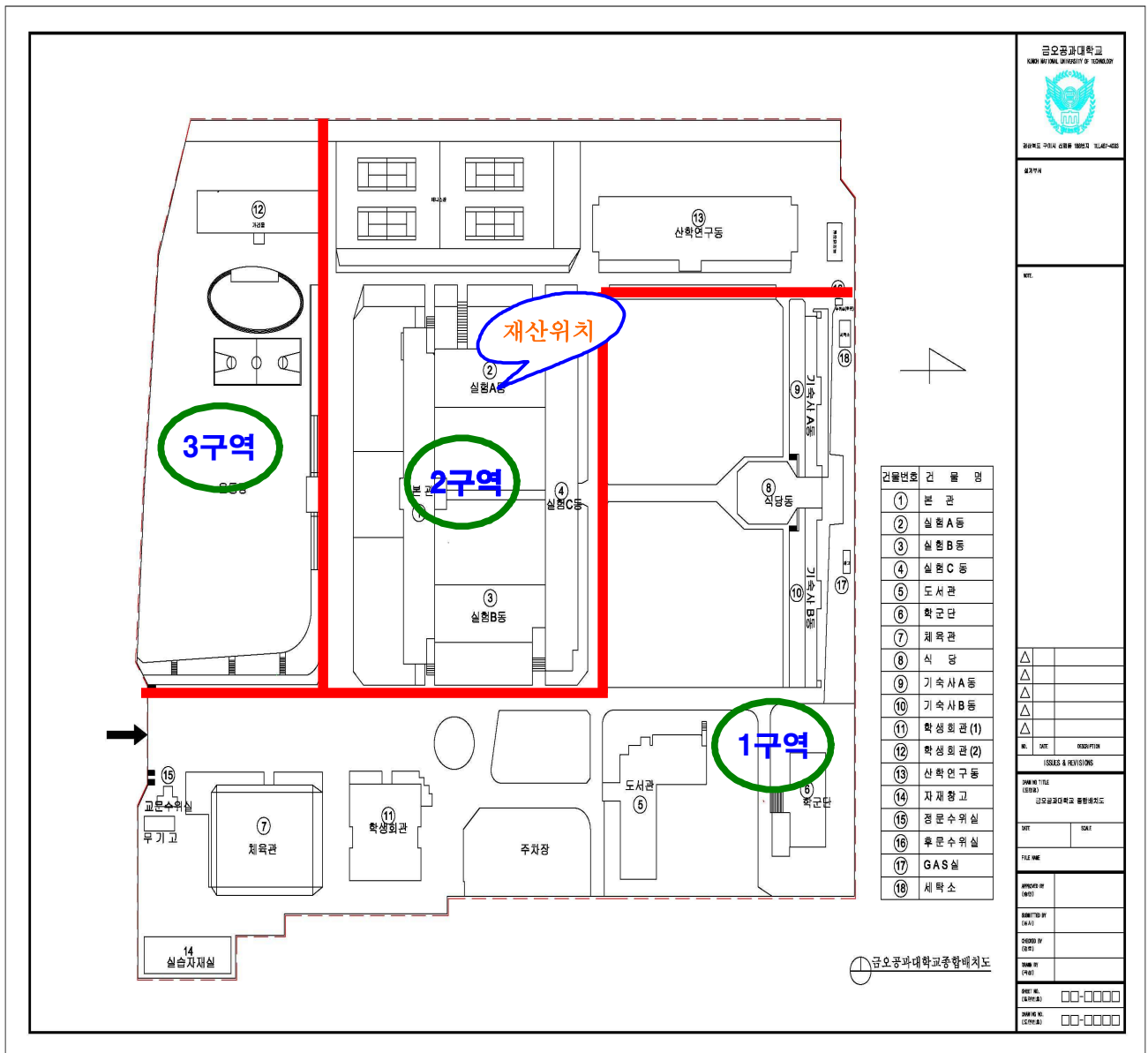
매 입 대 상 재 산

□ 재산의 표시

○ 소 재 지 : 신평동 188-1번지 외11(구, 금오공대 일부)

○ 지목 및 면적 : 대지 35,019㎡, 건물 34,356㎡, 수목 등

□ 재산 위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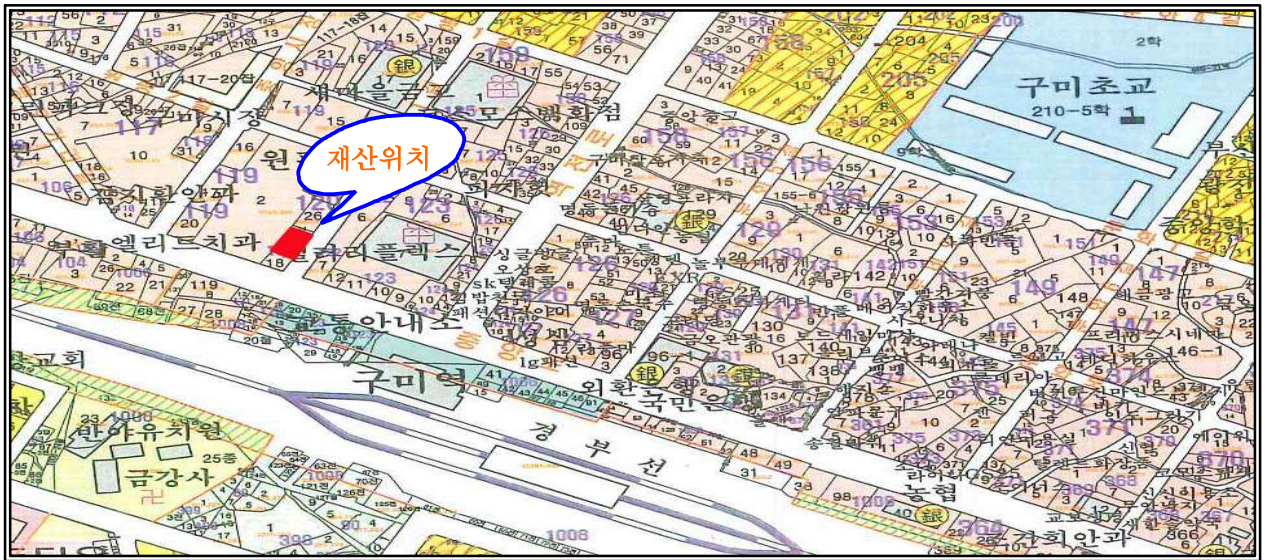
매 각 대 상 재 산

□ 재산의 표시

○ 소 재 지 : 원평동 121-5번지(구, 원평파출소)

○ 지목 및 면적 : 대지 180㎡, 건물 134㎡

□ 재산 위치도



□ 현황사진



【 관 계 법 령 】

□ 지방자치법 제39조(지방의회의 의결사항)

① 지방의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 5. <생략>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재산의 취득·처분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6조(중요 재산, 공공시설의 취득·설치 및 처분의 범위 등)

① 법 제39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재산의 취득·처분"이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1항에 따른 중요 재산의 취득·처분을 말한다.

□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제10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 (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세워 그 지방의 회의의 결을 받아야 한다. 관리계획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공유재산의 범위, 관리계획의 작성기준 및 변경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관리계획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결을 받았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6호에 따른 중요 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지방의회의 결을 받은 것으로 본다.

□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제38조(매각계약의 해지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일반재산을 매수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매각계약을 해지하거나 해제할 수 있다.

1. 거짓 진술, 거짓 증명서류의 제출,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그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2. 제37조제1항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매수대금을 내지 아니한 경우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거나 해제하면 지체 없이 그 권리의 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일반재산을 매수한 자가 제37조제1항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매수대금을 내지 아니하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시행령 제7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관리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중요재산의 취득〔매입, 기부채납, 무상 양수, 환지, 무상귀속, 교환, 건물의 신축·증축 및 공작물의 설치, 출자 및 그 밖의 취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처분(매각, 양여, 교환, 무상귀속, 건물의 멸실, 출자 및 그 밖의 처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한다.

1. 1건당 기준가격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재산.
이 경우 기준가격은 토지에 대해서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9조에 따른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算定)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로 하고, 건물과 그 밖의 재산에 대해서는 「지방세법」에 따른 시가표준액으로 하되, 건물의 신축·증축 및 공작물의 설치의 경우에는 토지보상비 등 토지를 취득하는 데 드는 비용을 제외한 건축비 및 시설비 등 사업비로 한다.

가. 취득의 경우 : 20억원(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10억원)

나. 처분의 경우 : 10억원(서울특별시와 경기도의 경우에는 20억원)

2. 토지의 경우 1건당 토지 면적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면적 이상인 재산

가. 취득의 경우:1건당 6천제곱미터(사·군·자치구의 경우에는 1천제곱미터)

나. 처분의 경우:1건당 5천제곱미터(사·군·자치구의 경우에는 2천제곱미터)

□ 구미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5조(공유재산심의회의 업무)

①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사항

3. 행정·보존재산으로서 그 목적 외에 사용하고 있는 재산의 용도변경 또는 용도폐지에 관한 사항

4. 잡종재산의 용도변경

5. 기타 공유재산에 관하여 재산관리관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구미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공유재산 관리계획)

① 법 제10조 및 영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시장이 다음년도 예산편성 전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어 공유재산을 취득·처분을 하여야 한다. 다만, 연도 중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의 변동이 있을 시는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기 전까지 의회 의결을 얻어야 한다.

②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작성은 재산관리 총괄 전담부서에서 하여야 한다. 다만, 공유림에 대해서는 공유임야관리 전담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